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9.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량 : 약325가구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25. 3. 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 3. 30. 이전 보증가입자 최대 3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입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입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입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19세~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연령 무관)

2. 지원자격

가.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파주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파주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심사통지 및 지원

가. 심사방법

- 제출한 서류 및 주택소유여부 등 조회내용을 기준으로 적격자 선정
- ※ 구비서류 미흡시 1차례 보완요청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부적합’ 결정 함.

나. 결과통보

- 제출한 서류 접수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적합’으로 결정하며, 결정 결과는 개별 통보.

다. 지원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인 본인 계좌 지급(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4. 신청서 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파주시청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1) 오프라인 접수

-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가능(12:00~13:00 제외)

2) 온라인 접수

-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5. 제출서류(※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발급용”으로 제출해야함)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식1], 서약서[서식2]
-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내역서(납부액기재)
-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 미혼 모두 제출)
- 5) 본인명의 통장사본
- 6)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 제출(신청인과 배우자 동일년도로 제출)
소득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 사실없음)’ 제출
근무기간에 따른 연소득 산정

6. 신청자 유의사항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 보증금 지원금 수령 이후, 보증 해지 및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환불받은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업무지침, 질의응답집 및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031-940-4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끝.

서식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자격 요건	주택소유여부 ¹⁾	(○, ×)	신혼부부 여부 ²⁾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³⁾	(○, ×)	보증기관 ³⁾	
	보증가입일자 ³⁾	납입보증료 ⁴⁾	원
	임차보증금	원	연소득 ⁵⁾	원

지급계좌 ⁶⁾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 2)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 4)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
-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6)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서식3**위임장****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	이의신청 []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